

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8-48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무관청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으로 개정됨
- 이에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협력지원, 활성화의 촉진(안 제4조~제5조)
- 경영지원 등, 판로촉진(안 제6조~제7조)
- 사업지원 등, 포상(안 제8조~제9조)

제정조례안 : 붙임1

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9. 17. ~ 10. 7.(초일미산입 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4, 붙임5

- 경기도 조례 및 방침결정문

< 불임 1 >

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자”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.
2.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력지원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)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·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
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경영지원 등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·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판로촉진)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·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지원 등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환경개선, 상표 등의 공동사업
2.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
3.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·판매, 시장개척
4.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

제9조(포상)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1.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
 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-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이태성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김은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영관 (행정 2624)